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 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’을 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’으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시기·기준 및 절차 등)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·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전후 2개월이내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·사유를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안전점검 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11과 같다.

⑤ 안전공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·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중전의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, 조 제목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‘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’을 ‘법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’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
2. 안전점검 연월일
3. 안전점검의 결과
4. 통지 연월일
5. 통지 사항
6. 안전점검자의 성명

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4(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)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통시장의 등록현황, 전통시장 점포 현황, 구획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

별표 17의 제2호 다목 중 ‘(법 제66조의2 관련)’을 ‘(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)’으로 하고,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보고 사항	서 식	보고 기한
가. ~ 나. (생 략)	(생 략)	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
다. 여러 사람이 이용하 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(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)	별지 제49호 서식	
라.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결과(법 제66조 의2 제3항 관련)		

별지 제49호서식 제목외 부분을 제1호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지 제49호서식]

한국전기안전공사						
우 주소		/전화()○○○-○○○○/팩스()○○○-○○○○				
담당 부서명		부장 ○○○		담당자 ○○○		
문서번호			시행일 . . .			
수 신: 산업통상자원부장관			발 신: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㉠			
제 목: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(년도)						
1.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						
시 설	일반용전기설비		자가용전기설비		계	
	적 합	부 적 합	적 합	부 적 합	적 합	부 적 합
청소년수련시설						
비디오물시청 제 공 업 시 설						

게임제공업시설						
멀티미디어문화 컨 텐 츠 설 비 제 공 업 시 설						
노 래 연 습 장						
단 란 주 점						
유 흥 주 점						
보 육 시 설						
유 치 원						
공 연 장						
영 화 상 영 관						
대 규 모 점 포						
종 합 병 원						
호 텔						
카 지 노						
국 제 회 의 장						
기 타						
소 계						

2. 전통시장 점포(추가)

구분 \ 시·도															
적 합															
부적합 (확인 점검)	적합														
	부적합														
개선명령발부															
미개수수용가										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) ① (생략)	제38조(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(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)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②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(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)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제38조의2(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시기·기준 및 절차 등)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·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전후 2개월이내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·사유를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	③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내 확인

제38조의2(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)
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는
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
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 신 설 >

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안전점검 기준
및 점검방법은 별표 11과 같다.

⑤ 안전공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
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
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
한다.

⑥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
라 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
에는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
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·개조 또
는 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
고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
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3(전기안전점검 결과 기록 등)

①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공
사는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
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
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
는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
장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
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전통시장 점포의 소유자 등의 성명
및 주소

< 신 설 >

[별표17]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(제50조의2제1항 관련)

1. (생 략)
2. 안전공사의 보고사항

보고사항	서 식	보고 기한
가. ~ 나. (생 략)	(생 략)	(생 략)
다.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(법 제 66조의2 관련)	별지 제 4 9 호 서식	
< 신 설 >		

3. (생 략)

2. 안전점검 연월일

3. 안전점검의 결과

4. 통지 연월일

5. 통지 사항

6. 안전점검자의 성명

제38조의4(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) ① 안전공사는 법 제 66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통시장의 등록현황, 전통시장 점포 현황, 구획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

[별표17]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(제50조의2제1항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2. 안전공사의 보고사항

보고사항	서 식	보고 기한
가. ~ 나. (생 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다.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(법 제 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)	별지 제 4 9 호 서식	
라.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결과(법 제 66조의2제3항 관련)		

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77